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9
----------	-----

2011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5월 11일, 최호정 의원외 10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5월 16일
- 다. 상정결과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정부인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 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서울특별시의 경우 2002년부터 존재하지 않고 있음), “고용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되고 제2조제4항 중 대통령령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내용이 개정되는 등 폐지의 원인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 본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규정(서울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용직공무원’ 규정을 삭제(제2조제3항4호 및 제4항)하는 개정안의 공포(2011. 5. 23) 및 시행 예정(2011. 8. 24)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5월 9일 최호정 의원외 10명이 발의하였음.

-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국가고용직공무원은 2005년 이후, 지방고용직공무원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직종<sup>1)</sup> 중 ‘고용직공무원’ 직종을 공무원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임.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은 급사·사환·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여 왔으나, 행정환경이 전산화·기계화되고,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민간 위탁 영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음. 고용직 제도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시행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 5. 23).

〈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경위 〉

- 2011. 4. 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11. 5. 13 정부 이송
- 2011. 5. 23. 공포
- 2011. 8. 24. 시행 예정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 5. 23 공포, 2011. 8. 2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b>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b>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b>4. &lt;삭제&gt;</b>
④ 제 3 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b>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b>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④ 제 3 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b>계약직공무원의</b>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1) 공무원의 직종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경력직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본 조례의 근거 법률에서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고, 서울시의 경우도 2002년 7월 31일 고용직 공무원 2명이 최종적으로 의원면직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폐지조례안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8월 24일 시행예정이라고 하나,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 법 개정 사항이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한 이유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본 폐지조례안이 법 시행 이전에 공포·시행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 현재 행정안전부도 「법」 개정을 통해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규정의 부칙을 통해 다른 법령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4월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음.
- 아울러 본 조례안의 폐지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도 고용직공무원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